

심사청구서

청구인 김규태

피청구인 김포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만수

불복대상인 처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4. 11. 1. 자로 한 94년도 11월분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1994. 11. 1. 자로 원고에게 한 94년도 11월분 의료보험료 부과처
분 중 금 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처와 2자녀와 함께 주소지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

습니다. 청구인은 지역의료보험 실시 직후인 1988. 1월 피청구인 조합에 지역피보험자로 가입하였고, 1994. 11. 1.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94년도 11월분 보험료로 돈 22,9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3. 법령 관계 검토

가. 의료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2조에서는 의료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도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 제3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주민은 당연 적용 피보험자로서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되는 등 하며 각 의료보험조합에서 부과하는 보험료는 모두 국세 징수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등 피보험자의 의사와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나. 특히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49조 제3항에서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조합 정관은 일정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과 같은 점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운용은 국민 개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서는 국민 모두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평등하고 공평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3. 피청구인 처분의 위법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피청구인조합 정관 제44조에 규정된 기본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세대 및 가족수 항목에 의하여 일괄적인 금액을 부과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능력 비례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청구인의 생업인 농사를 위한 농지보유와 농사용 차량 소유를 이유로 재산비례항목 및 자동차 항목에서 각기 소정의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나. 정관 규정의 적법여부

(1) 보험료 산정기준 요소

위 법률 제49조 제2항에서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법제 50조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1)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2) 피보험자의 수등으로 그 산정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관상에서 정하는 기준은 위 내용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등급에 따른 단가에 관한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역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부담부분인 피보험자의 수에 대한 부가분을 더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정관 규

정을 들 경우 이는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2) 피청구인조합의 위법한 산정 기준의 검토

(가) 기본 보험료 부과기준

피청구인조합 정관 제40조 제3항에서는 기본보험료는 피보험자당 보험료와 세대당 보험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른 정관 제44조에서는 피보험자당 보험료를 1인당 월 1,400원, 세대당 보험료를 월 1,8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조합의 이부분 정관은 피보험자의 수라는 법령상의 산정요인과 중복되는 세대당 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느바, 이부분은 법령에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부분 금액에 해당되는 금 1,8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은 의당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나) 능력비례보험료부과기준

정관 제40조 제2항에서는 능력비례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 재산비례보험료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는 정관 제43조 제1항에서는 재산비례보험료의 부과 근거 자료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과세자료의 재산가액과 전세보증금 등 주민신고재산액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재산가액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산정 요소가 아닐 뿐 아니라 특히 본건 재산들은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요소인 농지와 거주지이자 농사용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주택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부분 재산에 의하여 소득이 창출되므로 이미 소득수준항목에서 소득에 포함되어서 위 재산부분이 기히 보험료산정에 포함, 평가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부분 정관 역시 위 소득수준 항목에 중복될 뿐 아니라 법령에서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부분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 부과처분 역시 의당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이점 역시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산정 요소가 아닐 뿐 아니라 특히 위 법률 제49조 제3항 후단에서 “-- 등”으로 표시한 규정의 해석상으로도 위 의미는 위와같은 2가지 요소를 구성하는 하부개념에 관한 것일 뿐이지 이 외는 다른 새로운 산정요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부분 정관 제43 조의 2 역시 위 소득수준 항목에 중복될 뿐 아니라 법령에서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부분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 부과처분 역시 의당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다. 이상과 같이 본건 피청구인의 보험료 부과금액중 앞서 본 각 항목상의 금액은 위와같이 무효인 정관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 부과처분은 의당 취소되어져야 하겠습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중 위 해당금액 부분은 위법하여 의당 취소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고 저 본건 심사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四三五

1. 소갑제1호증 의료보험료 고지서
 1. 소갑제2호증 정 관

첨부서류

- ## 1. 위 입증방법 각1통

1994. 12. 5.

위 심사청구인 김 규 태

김포군의료보험심사위원회